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6
----------	------

발의연월일 : 2014. 03 . .

발 의 자 : 안병배·노현경·류수용·
김기홍 의원
(찬성자 3인)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주민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불가피하게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과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주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안 제9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민사소송법
-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지급액 등은 조례 시행 후 신청접수건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므로(안 제4조),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제외함.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 등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하거나 이주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2. 기타 위와 유사한 사정으로서 이 조례 제4조의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3조(법령과의 관계)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지 상실주민 등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의 심사·결정
2. 제6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3.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금) 시장은 주거지 상실주민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

제8조(지급청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출국자,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그 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지급액 등은 조례 시행 후 신청접수건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므로(안 제4조),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거 정하기로 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제외함.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인천광역시의회의회 의원 안 병 배